

- 「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」 지원사업 -
‘NH농협은행 협업 자금’ 추가 지원 변경 공고

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규정 등에 의거 「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」 지원사업인 ‘NH농협은행 협업 자금’ 추가 지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6년 8월 20일

인천광역시장

■ 특별자금 지원 개요

1. 지원 규모: 1,070억원

2. 지원 대상: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

- 경영안정자금 지원 업종(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)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
 - 1) 제조업: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% 이상
 - * 제조업관련업: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·허가증 **必** (별첨 참고)
 - 2)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(사전상담必)
 - * 대출 가능 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
- 신청일 현재 인천시 경영안정자금(이차보전) 잔여 한도가 있는 기업
 - * 잔여 한도 = 당해연도 총 지원한도 - 수혜중인 인천시 이차보전 지원금액(대출원금 기준)
 - * 잔여 한도가 없는 기업은 기존 이차보전 대출금액 만기일 이후 신청 가능

3. 지원 내용: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

- 지원 한도: 일반기업 10억원(우대10~100억원,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)
 - ※ 최근 결산 매출액의 1/3과 지원 한도 **중 적은 금액**이 최대한도 (최저 2억원)
- 지원 기간: 1년(만기 일시 상환)
- 지원 금리: 1.8%p 균등 지원(NH농협은행 0.5%p, 인천시 1.3%p)

4. 기타 조건

- 취급 은행: NH농협은행 (타 은행 불가)
- 대출 금리: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
- 대출 취급기한: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(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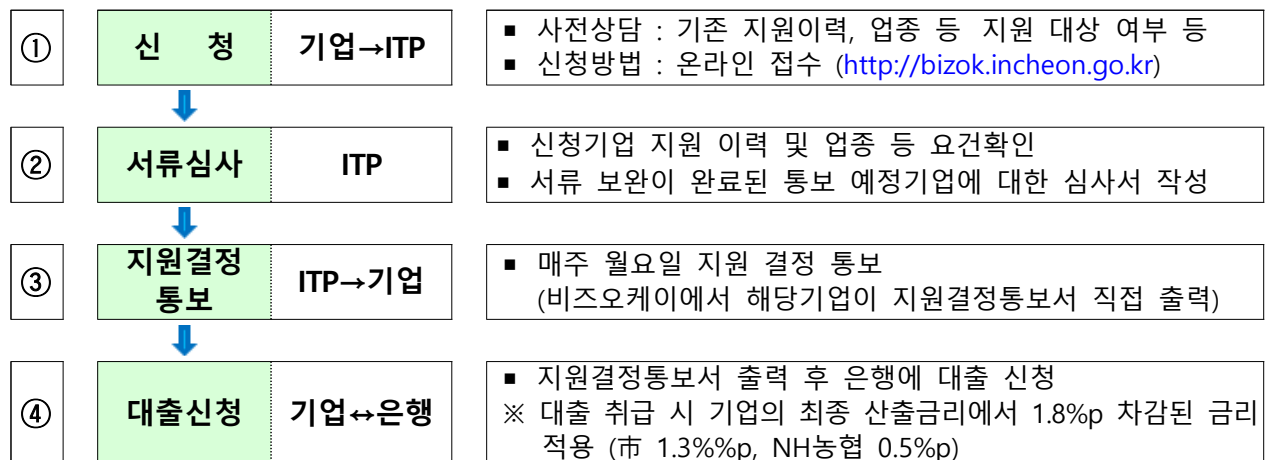
5. 신청 및 접수

- 신청 기간: 2026. 8.20.(목) ~ 재원 소진 시까지
- 신청 방법: 온라인 신청 (비즈오케이 <http://bizok.incheon.go.kr>)
- 신청 문의: 인천테크노파크 경영지원센터 ☎(032)260-0661~0664

6. 구비서류

구 분	서류 및 요건
사업자등록증	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
재 무 제 표	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(홈택스) 단,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이 어려운 경우, 세무사 등이 발행한 재무제표확인원 대체 가능
업종증빙서류	신청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
	제 조 업 제조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주용도: 공장 또는 제조업소) 및 임대차계약서(임차시必)
	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·허가증
납세 증명서	국세, 지방세 완납증명서(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)
우대 관련 증빙서류	우대 조건 해당 시 관련 증빙서류

7. 지원절차



8. 심사방법

- 업종, 지원 이력, 지원 항목별 심사 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판단
- 지원 한도 산정
 - 최근 결산 매출액의 1/3과 각 지원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최대한도이며, 기존 상환 중인 대출 원금을 제외하여 지원 한도 산정
 - 창업 1년 미만(또는 결산기간 미도래)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 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
 -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
 -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

※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

※ 심사 기준 완화

- 구(區)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
-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(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) 미적용

9. 지원 제외 대상

- 시(市) 경영안정자금(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)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
 - ※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(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)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
- 최근 4년 이내에 운전자금으로 4회 이상 지원결정 받은 기업(인천시 협약대출로 현재 상환중인 대출건수 기준)
 - ※ 동일한 관리번호로 여러건 대출 시 1건으로 간주
- 위탁생산기업(OEM) 제외
-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
- 휴·폐업중인 기업, 제조업 전업을 30% 미만인 기업(제조업에 한함)
-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(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)
- 세금을 체납 중인 기업
- 부동산업,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
-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
10. 지원결정 취소 등

- 지원 결정 후 폐업, 관외 이전,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지원결정 또는 대출받은 경우
-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
11.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은행 자금으로 대출을 받고 인천시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함
- 은행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(부동산, 보증서 등) 제공 또는 신용대출 심사기준을 충족해야 대출 실행이 가능하며,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업체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담보 부족 등 은행 여신규정 미충족 시 대출이 제한될 수 있음
 - * 보증서는 보증기관(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, 인천신용보증재단 등) 별도 문의
- 대출금리 및 이차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실행 시점 기준으로 적용됨
- 용자지원기간 중 휴·폐업하는 경우, 사업장(공장) 소재지가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 이차보전 지원 중단, 회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지원결정이 확정된 금액은 대출실행 전이라도 기업별 지원한도에 포함하여 산정(단, 대출취급기한까지 대출 미실행 시 한도 포함 제외)
- 지원결정 확정 이후 타 사업 신청 시, 기존 지원 건 포기신청 후 재신청 가능
- 기업별 지원한도는 금회 특별 지원사업과 별도 시행 예정인 ‘2026년 인천시 경영안정자금(정기공고)’의 한도와 통합 적용(합산관리)되므로, 동일 기업의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중복신청은 제한되며 중복신청 접수 시, 선접수 1건만 유효하며 나머지 신청은 반려될 수 있음
-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(신청기업 대표자)에게 귀속하며, 구비서류 누락 등 제출 서류가 미비한 경우, 신청자(기업) 외 대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,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신청취소 처리할 수 있음
-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경우 참여 제한 등 제재 및 법적 조치가 행해질 수 있음

‘금융기관(NH농협은행) 협업 특별 경영안정자금’ 세부내용

□ 지원 대상별 세부 현황

○ 세부 심사방법은 2026년 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적용 ※ 인천광역시 공고 제2026-201호 참고

○ 우대 1회 지원 항목(지원한도 10억 원 이하)의 경우 일반기업 심사 적용

구 분	지원 항목	신청 대상(요건)	지원 한도	지원율	비고
일반기업	제조업 및 제조관련업	■ 제조업 : 공장등록(또는 용도증빙(제조소, 공장), 제조업전업률 30% 이상 · 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 필수 · 공장건축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(제조 용도 확인) ■ 제조관련업(별첨) :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·허가증	10억원	1.8%p 균등지원 (시 1.3%p, NH농협 0.5%p)	
여성·장애인기업	여성기업	■ 여성기업인확인서	10억원		
	여성친화기업	■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	10억원		우대1회
	장애인기업	■ 장애인기업확인서	10억원		
	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	■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(한도) 기부업체Ⅰ 5억원이내, 기부업체Ⅱ 10억원 이내	10억원		우대1회
인천시 선정 우수기업	유망중소기업	■ 인천시 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	20억원		
	아름다운공장	■ 인천시 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	15억원		우대1회
	비전기업	■ 인천시 지정 비전기업 선정서	35억원		
	중견성장사다리	■ 인천시 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	55억원		
	중소기업인대상	■ 인천시 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	55억원		
	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	■ 인천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	10억원		우대1회
	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	■ 인천시 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	10억원		우대1회
	가족친화기업	■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	10억원		우대1회
	뿌리기업 선정기업	■ 인천시 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	10억원		
	인재육성형 중소기업	■ 인천시 지정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서	10억원		우대1회
	산업평화대상	■ 산업평화대상 수상 선정서	15억원		우대1회
	지역 상품 구매 기업	■ 지역상품 매입총괄표 및 관련 증빙(세금계산서)	10억원	2.0%p 균등지원 (시 2.0%p)	우대1회
	인천미래혁신기업	■ 인천미래혁신기업 선정 서류	50억 원		
혁신형기업	벤처기업	■ 벤처기업확인서	10억원	1.8%p 균등지원 (시 1.3%p, NH농협 0.5%p)	우대1회
	스마트공장도입기업	■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서(중소벤처기업부)	15억원		우대1회
	지식기반서비스업	■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	15억원		
	혁신형중소기업 (MAIN-BIZ)	■ 메인비즈 인증서	10억원		우대1회
	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	■ 인천빅웨이브모펀드 투자기업 확인서	10억원		우대1회

구 분	지원 항목	신청 대상(요건)	지원 한도	지원율	비고
지역 R&D 혁신기업	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기업	■ 신기술(NET), 신제품(NEP) 인증서	10억 원		우대1회
	IR52장영실상 수상기업	■ IR52장영실상 수상 기업	10억 원		
	산업포장, 산업훈장 수상기업	■ 산업포장, 산업훈장 수상 기업	10억 원		
	국가R&D(연간 5억 원 이상) 선정기업	■ 국가R&D(연간 5억원 이상) 선정기업	10억 원		
	예비(아기)유니콘, 퍼스트펍권 선정기업	■ 예비유니콘, 아기유니콘, 퍼스트펍권 선정기업	10억 원		
수출형 기업	FTA인증 수출기업	■ 업체별(품목별)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(관세청)	10억원	1.8%p 균등지원 (시 1.3%p, NH농협 0.5%p)	우대1회
	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	■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	10억원		우대1회
	수출기업 (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1)	■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협회, 한국무역통계진흥원,한국관세무역개발원) ■ 간접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정보통신) (한도) 수출실적의 1/2과 매출액의 1/3,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 ■ 수출계약서(T/T, L/C, 구매확인서 등) (한도)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%와 매출액의 1/3, 30억원 중 가장 적은 금액	30억원		대출기간: 1년
고성장 기업	I.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% 이상	■ (공통)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· (고성장 I) -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% 이상 - 개업일자 2023. 01. 02 이전 -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· (고성장 II) -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% 이상 -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- 개업일자 2023. 01. 02 이전 -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	30억원		
	II.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% 이상		30억원		
고용창출 기업	I.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% 이상	■ (공통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: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(12월 귀속)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(매월) 신고서 · 고용창출 I 과 II는 개업일자가 2023. 01.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, 처음 및 마 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· (고용인원 산출방법) - 1안: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(귀속분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- 2안: 평균인원 계산 · 월별 신고업체 : 귀속연월 1월~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· 반기별 신고업체 : 귀속연월 1월분(상반기), 7월분(하반기)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	10~55억원	(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: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, 100명 이상시 50억원 단,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)	
	II.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% 이상				
	III. 일자리창출 우수기업	■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			우대1회

구 분	지원 항목	신청 대상(요건)	지원 한도	지원율	비고
	IV.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	■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, 고용인원 10명 증가(1년간은 12개월 총족 필수, 11개월, 13개월 등은 불가) ■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· (고용인원 증가분 = B - A) - A :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- B :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			
	V.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	■ 인천시 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			우대1회
	VI.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	■ 내일채움공제 가입증서	10억 원	2.0%p 균등지원 (시 2.0%p)	우대1회
산업확충 기업	해외유턴기업	■ 완전복귀: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내 공장을 설립(사업자등록)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■ 부분복귀: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내 공장을 설립(사업자등록)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※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(제조업만 해당되며,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)	50~100억원	1.8%p 균등지원 (시 1.3%p, NH농협 0.5%p)	우대1회
	우리시 전입기업	■ 우리시로 공장(본점)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(※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) · 법인등기부등본: 법인의 이전일자(입주일자) 확인 · 사실증명: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(입주일자) 확인	50억원		
	신규산단 입주기업	■ 신규산단(강화일반, 서운산단, IHP도시첨단, I-FOOD PARK) 입주 예정기업 또는 입주(1년 이내) 기업 ■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(1년 이내) 기업	20억원		
	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	· 입주계약(확인)서 -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※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실증명서 증빙	10억원		
	6대전력산업	■ 전략산업확인서(소정양식) ※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	10억원		
	재해기업	· 재해피해 증빙서류 - 재해확인서(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) 부대시설 증빙서류, 재해확인증(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)	15억원		
사회적 친화기업	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	■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 인턴 채용기업 ■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 지원약정서 체결 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■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	1억원		※ 해당항목은 최대 지원한도 1억원 적용
	창조경제혁신기업	■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 센터 추천기업(추천서)	5억원		우대1회
	관광업	■ 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, 지정 및 허가받은 기업	3억원		

※ (지역 상품 구매 기업) 최근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부속명세서(제조원가명세서) 당기재료매입액 대비 올해 연도('26.1.1.~) 지역상품 10% 이상 매입한 기업

별첨

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 안내

① 지원대상 :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

① 제조업 : 제조업(공장등록 必), 제조업전업률 30% 이상

요건	매출요건
공장등록 (또는 용도증빙(제조소, 공장)) - 공장건축면적 500㎡ 이상 : 공장등록증 필수 - 공장건축면적 500㎡ 미만 :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 대장(제조 용도 확인)	전업률 30% 이상 - 손익계산서에서 전체 매출대비 제품매출비율 - 제품매출/전체매출=30%이상

② 제조업관련업 :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

번호	업종구분	증빙서류	비 고
1	자동차정비업(종합,소형)	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(종합,소형) 등록증	부분(전문) 정비업제외
2	시내버스 및 전세버스운송업 택시운송업	(시내버스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자동차운송사업면허증 (전세버스)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업체 (택시) 택시운송사업등록증	
3	건설업	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증	
4	측량업	지적법에 의한 측량업 등록증	
5	전기공사업	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증	
6	정보통신공사업	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증	
7	소방시설공사업	소방시설 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증	
8	무역업	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및 수출실적증명서 ※ 직접 수출실적 70% 이상 충족	
9	창업보육센터입주기업	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확인서 ※ 제물포스마트타운JST입주기업 포함	
10	제조업관련 서비스업 · 지식기반서비스업 · 지식서비스업	해당 등록증 또는 허가증	

※ 10번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, 지식서비스업은 별표 참고

[별표]

<제조관련서비스업·지식기반서비스업·지식서비스업 범위>

제조업관련 서비스업

산 업 명	표준산업분류번호
도로화물 운송업	493
해상 운송업	501
항공 운송업	51
화물 취급업	5294
보관 및 창고업	5210
물류 터미널 운영업	52913
화물 운송 중개,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	52992
화물 포장,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	52993
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(오라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)	76390
산업설비,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	74212
폐기물 수집·운반업	381
(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)	(39009)
폐기물 처리업	382
폐수 처리업	37012

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

산 업 명	표준산업분류번호
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	62021
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1
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2
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19
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21
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22
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	62010
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	63120
(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	
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	63991
(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)	
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	70111
농림수산물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	70112
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	70113
전기·전자공학 연구개발업	70121
기타 공학 연구개발업	70129
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	70119
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	70201
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	70209
시장 조사업(여론 조사업 제외)	71400
경영 컨설팅업	71531
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	39001
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009
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72122
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	72129
제품 디자인업	73202
시각 디자인업	73203
패션,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	73209
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	72911
기타 기술 시험, 검사 및 분석업	72919
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1
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2
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	59113
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4

지식서비스업

산 업 명	표준산업분류번호
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	75991
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	75992
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제조관련서비스업·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

- 1) 제조관련서비스업·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
 - 통계청>통계분류포털>한국표준산업분류>분류코드 검색
 - ※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
ex.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
(시설경비허가증,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,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)
- 2)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
 -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
 - 관련 매출액 확인 (세금계산서 확인)
 - ※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(관련매출)가 전체매출의 30% 이상 충족하여야 함
ex. 포장 및 충전업 등